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특례 신설〉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06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특례 신설 (우재준의원안)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우재준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6.

다. 회 부 일 : 2025. 1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감면대상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물안보, 물관리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도 이러한 과세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같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2).

Ⅲ. 검토의견

1.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특례 신설(우재준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22) ○ 감면대상: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장에서 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산업 등 ○ 감면율: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 청년 상시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 사업장의 경우 2,000만원 ○ 사후관리: 상시근로자 수 감소, 사업장 폐업, 사업자 이전 시 사후추징 ○ 적용기한: 2028. 12. 31.	□ 감면대상에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 추가 ○ 감면대상: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이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u>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사업장에서 하는 물산업 등</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적용례: 법 시행 이전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도 적용

* 우재준의원안 2025. 12. 16. 발의(의안번호 15306)

□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에 대해 물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법 제121조의22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¹⁾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현재 대구경북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첨단 의료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5년 제1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추진을 결정하였고, 이후 2008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2009년 8월 대구경북 신서지구(102만㎡)와 충북 오송지구(113만㎡) 등 2곳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되었음.

대구경북은 합성신약, IT기반 첨단의료기기를, 충북 오송은 바이오신약, BT기반 첨단의료기기를 특화분야로 하고 있음.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현황]

(단위: 천㎡, %)

지역	총면적	연구시설구역					기타 구역
		계	연구기관 입주구역	핵심인프라 구역	연구지원 시설구역	편의시설 구역	
충북	1,131.1	768.1	520	116.7	20.1	111.3	363
오송	(100.0)	(67.9)	(46)	(12.1)	(2.6)	(9.8)	(32.1)
대구	1,054.0	466.1	316.9	99.1	23.4	26.7	587.9
경북	(100.0)	(44.2)	(30.1)	(9.4)	(2.2)	(2.5)	(55.8)

자료: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상세현황]

(단위: 개)

단지	구분	총계	토지분양 업체수		연구실분양 업체수		임대 업체수	
			전체	분야별	전체	분야별	전체	분야별
대구 경북 (신서)	소계	93	43	-	31	-	19	-
	기업체	76	31	의약품 8 의료기기 23	31	의약품 4 의료기기 27	14	의약품 6 의료기기 8
	기 타	17	12	-	-	-	5	소속기관 1 공공기관 3 기타 12)
충북 (오송)	소계	132	73	-	-	-	59	-
	기업체	115	56	의약품 29 의료기기 18 화장품 1 의료기술 8	해당 없음		59	의약품 26 의료기기 9 의료기술 24
	기 타	17	17	-			-	-

자료: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는 다양한 규제 특례³⁾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공동연구개발을 위

2)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경북대병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전자정보기사사업단

3) 단지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을 임상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 인정,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 연장(2년 → 5년), 단지내 연구개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등

한 장비활용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실증평가,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행법 제121조의22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⁴⁾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 발생 이후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가 적용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지 내 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관련 기업으로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조세특례의 대상에 해당함.

- 법 제121조의22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진흥법」⁵⁾에 따른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산업단지를 의미함.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의과학·치의학·한의학·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 나.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 다.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의료 관련 기술

5)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토지이용 현황]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
합 계		2,321,928.7	100.0
산업시설용지		1,483,324.6	63.9
	제조시설용지	1,366,994.4	58.9
	연구시설용지	30,838.1	1.3
	물류시설용지	85,492.1	3.7
복합시설용지		69,767.0	3.0
지원시설용지		30,369.5	1.3
상업용지		28,353.7	1.2
주거용지		77,528.3	3.3
기반시설용지		632,585.6	27.3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하고 있고, 2025년 3월말 기준 토지 분양기업 128개사와 식품벤처센터(임대공간) 입주기업 34개사 등 총 162개사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이며 투자유치 성과 및 분양률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성과]

(단위: 개,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투자유치	6	24	50	69	89	96	114	126	125	129	128
고용창출					581	810	1,044	1,416	1,628	자료없음	
분양률	7.2	18.9	27.9	34.5	40.9	49.0	65.2	72.4	73.7	74.5	74.0

주) 2025년 3월말 기준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현행법령⁶⁾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산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서 식품산업과 그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예정)기업 162개사 모두 조세특례의 대상에 해당함.

□ 한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는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성을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및 집적단지를 말함.⁷⁾

6)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법 제121조의2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그에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
 -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물기업 기술개발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로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설치되었고, 부지면적은 총 145,209m² (약 44,000평)임. 주요시설로는 실증플랜트, 수요자설계구역, 종합관망시험시설, 물융합연구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워터캠퍼스가 있음.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시설별 기능]

구분	시설명	직접지원	간접지원
실증화 시설	실증플랜트 수요자설계구역 관망시험시설	• (실증화) 물기업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량 등 실증 비용 지원	• (실증화) 물기업 수요 맞춤형 실증시험 및 인프라 제공 • (기술개발) 물기술의 성능평가 지원
	실험분석시설	• (기술개발/실증화) 8개 분	• (기술개발) 기업의 기술개발

- 라. 「수도법」 제3조제35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 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이용·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소재·장치·기기·약품의 시험·검사·인증, 제조·판매·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물기업”이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및 집적단지를 말한다.
6.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실증화”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실증설비 적용 등을 통하여 규모 확정, 최적화 또는 주변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시설명	직접지원	간접지원
		야, 744항목 공인시험 분석 수수료 지원	을 위한 실험실 인프라 및 기술 컨설팅 제공 • (인검증) 국내외 인검증 취득 사전시험 및 컨설팅 지원
진흥 시설	물융합 연구센터	• (기술개발/사업화) 물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 (인검증) 국내외 인·검증 취득비용 지원	• (기술개발) 물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컨설팅 지원 • (기술개발) 실증 인프라-물기업 컨소시엄으로 국가R&D, 해외 기술개발 프로젝트 공동참여 • (인검증) 국내외 인·검증 매뉴얼 및 유관기관 협력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 (판로) 물기업 홍보·마케팅, 브랜드 비용 지원, 국내외 전시회·구매상담회 참여 비용 지원 • (해외진출) 해외 성능검증, 수출 물류, 시장개척단 등 해외진출 비용 지원	• (판로) 물산업 수요처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매칭, 홍보 지원 • (판로) 환경공단 관급자재, 조달청 공공조달 등 판로 지원 • (해외진출) 해외진출을 위한 국가별 가이드라인 제공
	워터캠퍼스	• (창업)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시제품 제작 등 창업자금 지원 • (기술개발)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 (창업) 창업공간 제공, 창업 보육 멘토링, 판로지원 등 • (교육) 특성화대학원, 재직자 양성교육 등 물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입주대상은 물산업 기술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국가물 산업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을 선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중견기업,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 이전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연구기관, 물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물산업분야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 등임.

2025년 12월 기준으로 연구시설에 120개 기업이 입주하고, 집적단지
 지에 39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중복을 제외하면 총 148
 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음.

- 개정안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
 해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
 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물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2024년 물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물산업 영
 위 사업체 수는 총 18,075개로 전년도 대비 3.0% 증가했고, 종사자
 수(1.7%), 물산업 분야 매출액(2.6%), 물산업 분야 수출액(0.6%)도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물산업 통계 5개년추이(주요항목)]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체 수	16,540	16,990	17,283	17,553	18,075
종사자 수	193,480	197,863	200,650	207,774	211,385
매출액	46,201,692	46,572,605	47,422,047	49,690,178	50,997,029
수출액	1,817,980	1,865,587	1,974,859	2,055,568	2,067,923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4년 물산업 통계조사보고서(2023년 기준)

이와 같이 물산업 사업체 수, 종사자수, 매출액, 수출액 등이 늘어
 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혜
 택을 제공하면 세부담 완화로 기업의 입주가 늘어나고⁸⁾ 기업의 투

8) 2025년 초 기준으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업집적단지는 7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음.

자가 확대될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세액감면 제도는 감면한도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지역의 고용도 늘어나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기존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액을 감면하는 경우 해당 감면분은 신규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는 효과는 없이 세수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역특구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이 늘어날수록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차원에서 각종 지역특구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요구가 많아지고 세입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지역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⁹⁾

문 의 처

02)6788-5155

9)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특정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은 여타 지역과의 차등과세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